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2-31호
2022. 5. 13.(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공 고(3)

-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공고(공고 제2022-506호) …… 1
- 대전 상서·평촌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공고 제2022-515호) 2
- 도로의 통행금지제한 공고(공고 제2022-516호) …………… 17

입 법 예 고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08호) …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09호) 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10호) 40

공 람									
--------	--	--	--	--	--	--	--	--	--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공고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대덕구공동체 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협약일: 2022. 5. 10.(화)
2. 위탁기간: 2022. 8. 1. ~ 2025. 7. 31.(3년)
3.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주소	면적	주요시설	종사자	비고
대 덕 구 공 동 체 지 원 센 터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 송촌동행정복지센터 3층	474.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회의실 ■ 교육장 ■ 공유부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명 	

4. 수탁운영법인 개요

법인명	주소	대 표	주요사업	비고
민들레의료 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	석연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지원사업 ■ 마을역량강화 ■ 공동체,주민교육 	

5. 위탁사무

- 가.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 나.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
-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 마.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 바. 공동체·주민교육(마을과 자치)에 관한 사항
- 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자원 육성 및 관리
- 아.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끝.

대전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5호(2012.2.2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3-73호(2013.4.1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200호(2016.12.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60호(2017.10.2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196호(2018.10.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138호(2019.7.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6호(2020.1.1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7호(2020.6.1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33호(2020.9.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63호(2020.10.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5호(2021.05.03.)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가) 열악한 주거 및 교통시설을 비롯하여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악화, 토지이용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으로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탄진 거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임

나)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나) 면적: 2,595,009㎡

4)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2016년 ~ 2025년

5)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595,009	-	2,595,009	-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01,017	증) 16,552	217,569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201,017	증) 16,552	217,569	도시개발사업	변경	
존치 지역	소계	2,393,992	감) 16,552	2,377,440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남경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44,414	-	44,414	-	-
		신탄진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202,351	-	202,351	-	-
		상서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724,745	감) 16,348	708,397	-	변경
		평촌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388,343	감) 204	388,139	-	변경
		신탄진동2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63,965	-	63,965	-	-
	존치 시설	KT&G	510,955	-	510,955	-	-
		대전철도차량기지	459,219	-	459,219	-	-

6)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595,009	-	2,595,009	100.0		
주거 용지	소계	86,995	-	86,995	3.35	
	주거용지	74,845	-	74,845	2.88	
	공동주택용지	12,150	-	12,150	0.47	
산업시설용지	2,159,382	증) 9,699	2,169,081	83.59		
지원시설용지	14,656	증) 5,014	19,670	0.76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333,976	감) 14,713	319,263	12.30	
	도로	226,575	감) 11,117	215,458	8.31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평촌2가로공원과 중복결정(600㎡) 제외
	주차장	6,474	감) 69	6,405	0.25	
	철도	24,246	-	24,246	0.93	
	광장	754	-	754	0.03	
	공원	43,032	증) 3,440	46,472	1.79	근린공원, 가로공원, 소공원
	녹지	14,693	감) 1,074	13,619	0.52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360	-	360	0.01	
	하천	11,949	-	11,949	0.46	
	저류시설	5,893 (2,064)	감) 5,893 증) 2,041	- (4,105)	- (0.16)	총 2개소 - 주차장, 소공원과 중복결정 (지하저류시설 : 4,105㎡)
전기공급설비	-	-				

나.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안) 주요내용

1)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가) 기정: 2016년 ~ 2022년

나) 변경: ┌ 1단계: 2016년 ~ 2023년 6월

└ 2단계: 2016년 ~ 2025년 12월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01,017	증) 16,552	217,569	1단계 2단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②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01,017㎡ → 217,569㎡ 증) 16,552㎡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1,017	증) 16,552	217,569	100.0	
일반공업지역	201,017	증) 16,552	217,569	100.0	1단계 2단계

다)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01,017	증) 16,552	217,569	1단계 2단계

■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②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01,017㎡ → 217,569㎡ 증) 16,552㎡	대로3-48호선 도시개발법 구역계 부분실효에 따른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증감 (㎡)	변경			구성비 (%)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01,017	100.0	증)16,552	217,569	145,817	71,752	100.0			
산업시설용지	103,675	51.6	증)5,486	109,161	79,764	29,397	50.2			
지원시설용지	14,656	7.3	증)5,014	19,670	14,656	5,014	9.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82,686	41.1	증)6,052	88,738	51,397	37,341	40.8		
	공원 및 녹지	소 계	16,662	8.3	증)2,366	19,028	2,033	16,995	8.7	
		공 원	4,173	2.1	증)3,440	7,613	2,033	5,580	3.5	저류시설, 도로 중복면적 포함
		녹 지	12,489	6.2	감)1,074	11,415	-	11,415	5.2	
	주차장	5,401	2.7	감)69	5,332	3,561	1,771	2.5	저류시설 중복면적 포함	
	도 로	53,232	26.5	증)9,648	62,880	44,305	18,575	28.9	공원 중복 지하도로(600㎡) 제외	
	보행자도로	1,498	0.7	-	1,498	1,498	-	0.7		
저류시설	5,893 (2,064)	2.9 (1.0)	감)5,893 증)2,041	(4,105)	(2,064)	(2,041)	(1.9)	2개소 주차장, 공원과 중복결정		

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26	5,681 (5,340)	82,630 (64,378)	4	1,850	22,203	2	158	2,298	20	3,673 (3,332)	47,947 (39,877)
대로	1	456 (165)	13,019 (5,549)	-	-	-	-	-	-	1	456 (165)	13,019 (5,549)
중로	10	3,142 (3,092)	43,641 (43,041)	1	520	10,933	1	109	1,835	9	2,513 (2,463)	30,873 (30,273)
소로	15	2,083	15,788	3	1,330	11,270	1	49	463	10	704	4,055

주1) 가각 및 도로 범면부지 면적 미포함
주2) ()는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5	25~28	집산 도로	456 (165)	평촌동 178-4	신탄진동 산33-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1단계
기정	중로	1	212	20	집산 도로	520	중로2-601	대로2-1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53	12~22	국지 도로	766	대로2-1	중로1-212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2	679	15	국지 도로	109	중로1-212	소로1-신탄진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55	12	국지 도로	132	중로1-212	중로3-25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56	12	국지 도로	132	중로1-212	중로3-25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소로	1	신탄진8	10	국지 도로	322	대로3-85	중로1-212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1단계
기정	중로	3	296	12	국지 도로	113	중로3-255	중로3-25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97	12	국지 도로	225	중로3-255	중로3-256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298	12	국지 도로	155	중로3-256	중로3-25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중로	3	300	13	국지 도로	142	중로2-679	소로1-신탄진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6-200호 (’16. 12. 23)	1단계
기정	중로	3	300	13	국지 도로	142	중로2-679	소로1-신탄진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6-200호 (’16. 12. 23)	1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신탄진8	10	국지 도로	322	대로3-85	중로1-212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1단계
기정	소로	2	신탄진9	8	국지 도로	49	중로1-212	소로1-신탄진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4	6	보행자 도로	48	중로3-253	재정비촉진 지구계	특수도로	대전고시 제 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5	6	보행자 도로	77	중로3-253	중로3-297	특수도로	대전고시 제 2009-168호 (’09. 6. 26)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6	6	보행자 도로	43	중로1-212	중로3-297	특수도로	대전고시 제 2012-25호 (’12. 2. 21)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7	6	보행자 도로	49	중로3-253	재정비촉진 지구계	특수도로	대전고시 제 2012-25호 (’12. 2. 21)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29	6	보행자 도로	33	중로1-212	중로3-300	특수도로	대전고시 제 2016-200호 (’16. 12. 23)	1단계
기정	소로	3	신탄진30	6	국지 도로	51	중로3-253	재정비촉진 지구계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 2018-196호 (’18. 10. 18)	1단계
기정	중로	3	299	12	국지 도로	59	대로3-48	중로2-25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6-200호 (’16. 12. 23)	2단계
변경	중로	3	299	12	국지 도로	732 (682)	대로3-48	중로2-253	일반도로		• 평촌2 가로공원 중 복결정(600 m) • 2단계
폐지	중로	2	601	15	집산 도로	143 (25)	철도시설경계	소로1-평촌15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폐지	소로	1	평촌15	10~14	국지 도로	348	중로2-601	소로1-평촌1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폐지	소로	1	평촌18	10	국지 도로	443	소로1-평촌15	소로1-평촌15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신설	소로	1	가1	10	국지 도로	270	중로3-299	중로3-299	일반도로		• 2단계
신설	소로	1	가2	10	국지 도로	390	중로3-299	중로3-299	일반도로		• 2단계
폐지	소로	3	평촌4	5	국지 도로	72	평촌 산6-1	재정비촉진 지구계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폐지	소로	3	평촌7	6	국지 도로	6	소로1-평촌18	재정비촉진 지구계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신설	소로	3	가1	8	국지 도로	20	중로3-299	재정비촉진 지구계	일반도로		• 2단계
신설	소로	3	가2	8	국지 도로	30	재정비촉진 지구계	중로3-299	일반도로		• 2단계
신설	소로	3	가3	6	국지 도로	10	중로3-299	재정비촉진 지구계	일반도로		• 2단계
신설	소로	3	가4	5	국지 도로	114	소로1-가2	중로3-299	일반도로		• 2단계

주) ()는 대상지내 연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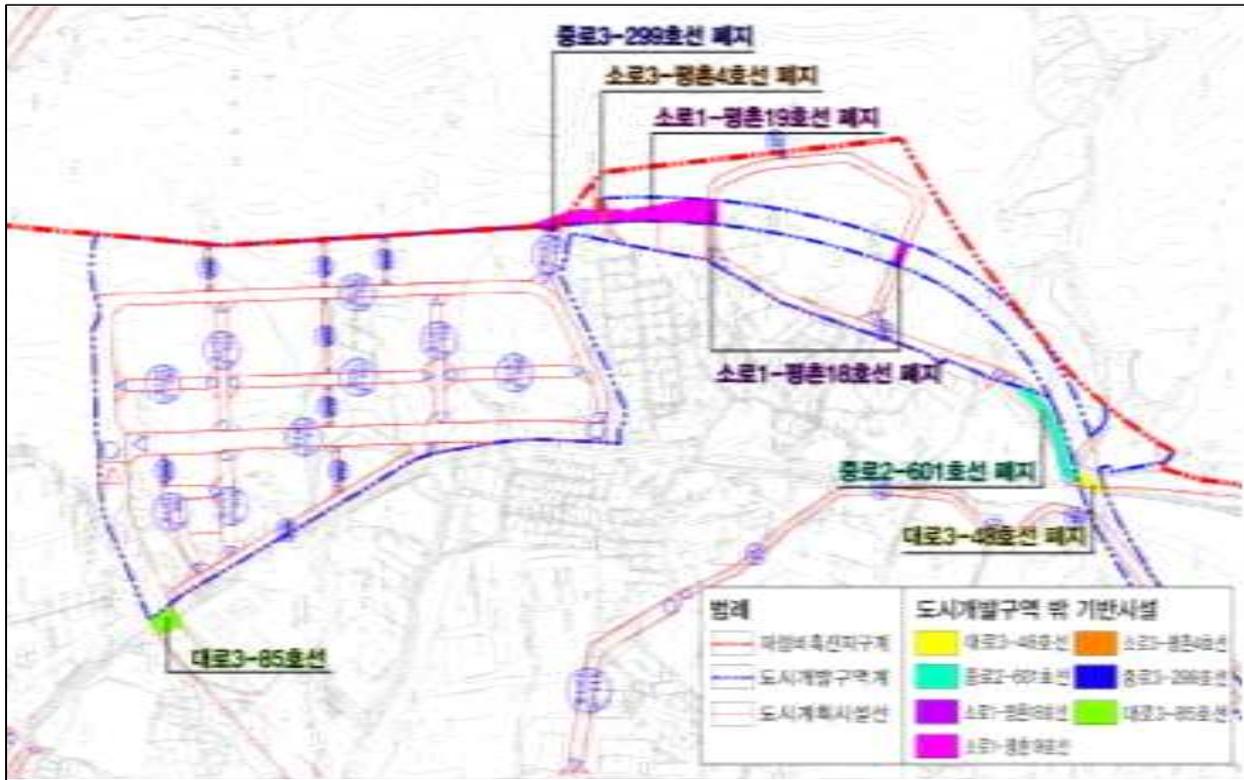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3-299	중로3-299	• 연장변경 (59m → 732m)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로2-601	-	• 폐지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1-평촌15	-	• 폐지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1-평촌18	-	• 폐지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1-가1	• 신설 (B=10m, L=270m)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1-가2	• 신설 (B=10m, L=390m)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평촌4	-	• 폐지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평촌7	-	• 폐지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가1	• 신설 (B=8m, L=20m)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가2	• 신설 (B=8m, L=30m)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가3	• 신설 (B=6m, L=10m)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가4	• 신설 (B=5m, L=114m)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 내용

구 분	계 획	계획내용	사업주체	비 고
계		• 구역밖 도로개설 전체면적 : 625㎡		
대로3-48	도로 개설	• B= 25m, L= 14m, A= 314㎡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폐지
소로1-평촌19	도로 개설	• B= 10~25m, L= 114m, A= 2,046㎡ • B= 1~25m, L= 81m, A= 846㎡	사업시행자	폐지
대로3-85	도로개설	• B= 25m, L= 22m, A= 625㎡	사업시행자	구역밖 일부개설
중로2-601	도로 개설	• B= 8m, L= 114m, A= 1,15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폐지
중로3-299	도로 개설	• L= 5m, A= 61㎡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폐지
소로1-평촌18	도로 개설	• B= 10m, L= 25m, A= 251㎡ • B= 10m, L= 25m, A= 251㎡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폐지
소로3-평촌4	도로 개설	• B= 5m, L= 26m, A= 13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폐지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④	평촌1주차장	신탄진동 산39-1 일원	1,497	-	1,497	대전고시 제 2009-168호 (’09. 6. 26)	• 1단계
기정	⑤	평촌2주차장	평촌동 159-8 일원	1,840	감)1,840	-	대전고시 제 2009-168호 (’09. 6. 26)	• 2단계
변경	⑤	평촌2주차장	평촌동 산10-12번지	-	증)1,771	1,771		• 2단계
기정	⑥	평촌3주차장	신탄진동 233-3 일원	2,064	-	2,064	대전고시 제 2016-200호 (’16. 12. 23)	• 저류시설 중복 결정(지하) • 1단계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유
⑤	평촌2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및 면적 변경 - 평촌동 159-8번지 일원 → 평촌동 산10-12번지 - 1,840m² → 1,771m² (감) 6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 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녹지	경관녹지	평촌동 산6-1일원	12,489	감) 2,355	10,134	대전고시 제 2009-168호 (’09. 6. 26)	• 2단계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평촌동 산6-17일원	-	증) 1,281	1,281		• 2단계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녹지 면적 변경 - 12,489㎡ → 10,134㎡ (감) 2,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 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①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녹지 신설 - 1,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 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4)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

구 분	시가화구역				비 고
	개 소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	4,173	증) 3,440	7,613	
가로공원	2	4,173	증) 1,399	5,572	1, 2단계
소공원	1	-	증) 2,041	2,041	2단계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평촌1 가로공원	가로공원	평촌동 산4-1일원	4,173	감) 2,140	2,033	대전고시 제2016-200호 (’16. 12. 23)	• 1단계
신설	②	평촌2 가로공원	가로공원	평촌동 산4-1일원	-	증) 3,539	3,539		• 2단계
신설	③	평촌3 소공원	소공원	평촌동 10-2일원	-	증) 2,041	2,041		• 저류시설 중복 결정(지하) • 2단계

※ ()는 대상지내 면적임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평촌1가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변경 - 4,173㎡ → 2,033㎡ (감) 2,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②	평촌2가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공원 신설 - 3,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③	평촌3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신설 - 2,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5) 저류시설(변경)

■ 저류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저류시설	신탄진동 226-2 일원	(2,064)	-	(2,064)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중복결정 - 평촌3주차장내 지하 조성 1단계
변경	②	저류시설	평촌동 10일원	5,893 (-)	감) 5,893 (증) 2,041	- (2,041)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중복결정 - 평촌3소공원내 지하 조성 2단계

■ 저류시설 변경사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저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변경 - 5,893㎡ → 0㎡ (감) 5,593㎡ -증) 2,041㎡ 평촌3소공원 내 지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6)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7) 수도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공람도서 참고)

다.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88,343	감) 204	388,139	100.0	
일반공업지역	388,343	감) 204	388,139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1,199 (755)	23,357 (7,903)	-	-	-	2	743	7,590	1	456 (12)	12,101 (313)
대로	1	456 (12)	12,101 (313)	-	-	-	-	-	-	1	456 (12)	12,101 (313)
중로	1	234	3,532	-	-	-	1	234	3,532	-	-	-
소로	1	509	4,058	-	-	-	1	509	4,058	-	-	-

주1) 가각 및 도로 법면부지 면적 미포함, ()는
주2) ()는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5	25~28	집산 도로	456 (12)	평촌동 178-4	신탄진동 산 33-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중로	2	115	15	국지 도로	234	소로2-A	대로3-85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폐지	중로	2	601	15	집산 도로	143 (71)	철도시설경계	소로1-평촌15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폐지	소로	1	평촌15	10~14	국지 도로	348 (1)	중로2-601	소로1-평촌1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09-168호 (’09. 6. 26)	
기정	소로	2	A	10~11	국지 도로	509	소로1-상서12	상서동31-3번지	일반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2-601	-	• 폐지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1-평촌15	-	• 폐지	•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라.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24,745	감) 16,348	708,397	100.0	
일반공업지역	724,745	감) 16,348	708,397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7	8,430 (7,585)	119,082 (99,758)	10	4,912 (4,233)	53,423 (39,286)	4	1,203	14,039	3	2,315 (2,149)	51,620 (46,433)
대로	1	2,096 (1,930)	50,263 (45,076)	-	-	-	-	-	-	1	2,096 (1,930)	50,263 (45,076)
중로	3	2,434 (1,755)	48,171 (34,034)	1	1,892 (1,213)	39,792 (25,655)	2	542	8,379	-	-	-
소로	13	3,900	20,648	9	3,020	13,631	2	661	5,660	2	219	1,357

주1) 가각 및 도로 범면부지 면적 미포함

주2) ()는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8	15~30	보조간선 도로	2,096 (1,930)	대로1-2	평촌동 53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폐지	소로	1	평촌19	10	집산 도로	504 (390)	평촌동 산 6-20	신탄진동 산 4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7	20~24. 7	보조간선 도로	1,892 (1,213)	대로1-2	대로3-4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중로	2	597	10~15	집산 도로	158	대로3-48	소로1-상서4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중로	2	600	15	집산 도로	384	중로1-107	대덕구 평촌동 311-4번지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소로	1	평촌4	10	국지 도로	299	중로2-600	소로1-평촌5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소로	1	상서4	10	국지 도로	101	소로1-상서7	소로1-상서12	일반도로	고시 제 호 (’90. 8. 24)	
기정	소로	1	상서5	10	국지 도로	405	중로1-107	소로1-상서12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소로	1	상서7	10	국지 도로	740	중로1-107	소로1-A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 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1	상서9	10	국지 도로	223	중로1-107	중로2-600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소로	1	상서12	10	국지 도로	867	중로2-597	소로1-상서4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소로	1	상서14	10	국지 도로	9	소로2-상서14	소로2-평촌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 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1	상서15	10	국지 도로	141	소로1-상서9	소로2-평촌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 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2	평촌3	8	국지 도로	330	소로1-평촌5	중로2-600	일반도로	고시 제 호 (’99. 7. 3)	
기정	소로	2	상서14	8	국지 도로	331	중로1-107	중로2-600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 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3	상서3	6	국지 도로	78	소로3-상서4	소로1-평촌4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 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3	상서4	6	국지 도로	141	대로3-48	소로3-상서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 2012-25호 (’12. 2. 21)	
신설	소로	1	A	8	국지 도로	235	대로3-48	중로2-114	일반도로	-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평촌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48호선 부분실효에 따른 도시개발법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마. 공람기간: 2022. 5. 13. ~ 2022. 6. 3.(공람일로부터 14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바. 공람내용: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등에 관한 사항

사. 공람장소: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 (☎042-270-65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 (☎042-608-5106)

아. 관계도서: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다만,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관련 기관(부서)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

의견서

2022. . .

「대전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질문 및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의견란」을 작성하여 시청 및 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 이후에 원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Fax(042-608-5106) 및 E-mail(sayto2@korea.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란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소속/직업	연락처 (집/휴대전화)	

도로의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로의 종류: 구도
2. 노선명: 중로2-116호선, 중로3-211호선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 외 모든 차량
4. 구간: 덕암로 L=1.1km(상서동 444-9 ~ 상서동 산46-4번지 일원)
5. 기간: 2022년 5월 19일 ~ 2022년 10월 31일
6. 이유: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7. 그 밖의 사항
 - 가. 통제방법: 주행차로 중 일부 부분통제(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 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신호원 유도 등에 의한 통행
 - 다. 연락처: 대덕구 건설과(☎042-608-5212), 디엘종합건설(주)(☎042-542-7100).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함 (안 제2조 및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세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원관리과(전화: 042-608-6671, 팩스: 042-608-3827, 이메일: imksye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원관리과 담당자 김소연(전화: 042-608-66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고일 부터”를 “공고일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휴·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를 “휴업·폐업 등으로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가액”을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매수인으로 부터”를 “매수인으로부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차감하고”를 “빼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해제하려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② (생략)</p>	<p>제3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p>	<p>③ ----- ----- ----- ----- (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p>	<p>제4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p>	<p>⑤ ----- ----- ---- <u>개의(開議)</u>----- -----.</p>
<p>제5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생략)</p>	<p>제5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u>공고일</u>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② ----- ----- <u>공고일</u>부터 ----- -----.</p>
<p>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p>	<p>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p>
<p>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p>	<p>① -----</p>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의 전문매각기관으로써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3.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생략)

②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 부터 인수증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도 이를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

1. ----- 휴업·폐업 등으로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

----- 가액(價額)-----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매수인으로 부터 -----

있다.

③ (생략)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생략)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빼고 -----

-----.

제11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제하려면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결손처분”의 사유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구분하여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 제13조제2항 신설, 제14조 및 제15조 등).
 - 나.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와 관련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등).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세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원관리과(전화: 042-608-6671, 팩스: 042-608-3827, 이메일: imksye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원관리과 담당자 김소연 (전화: 042-608-66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인”을 “소인(消印)”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하고”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 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 정리 결정결의서와 별지 제9호의2서식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74조의2제5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를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를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결손”을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분란 중 “불납결손액”을 “불납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의 (앞쪽) 제목 “결 손 처 분 표”를 “정 리 보 류 표”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같은 쪽 하단의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갑)의 (뒤쪽) 제목 “결 손 처 분 표”를 “정 리 보 류 표”로 하며, 같은 서식(을)의 제목 “결 손 처 분 표”를 “정 리 보 류 표”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결손처분여부”를 “정리보류여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2) 신청 자격란의 가.란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하단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란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란의 “지방세”를 “본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black; border-right: 2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p>결정결의서</p>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대로(로·길) 00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인)		
				등재	(인)		
				환급금	(인)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생략)</p> <p>②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이하 “<u>구금고</u>”라 한다)에서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u>소인</u>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p>	<p>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소인(消印)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 ----- ----- ----- ----- -----.</p> <p>제12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p>

(생략)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
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
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
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
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
에 따른다.

<신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
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
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
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
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
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

(현행과 같음)

② -----
----- 시효완성정리
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
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
--- 정리보류 결정결의서----
----- 정리보류표-----
-----.

② 법 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
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와 별
지 제9호의2서식 시효완성정리
표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정리보
류를 -----
----- 정리
보류 취소액-----

-----.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ombudsman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ombudsman의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가. ombudsman이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실시조사 등 조사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제2항).

나. ombudsman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의 권고”, 조사결과 신

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의 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읍부즈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안 제13조의2부터 안 제13조의4까지 신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감사실

(전화: 042-608-6033, FAX: 042-608-3812, E-mail: ryua11a@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 담당자 유재경(전화: 042-608-60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를 “읍부즈만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을“(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고충민원의 내용”을“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으로,“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을“시정을 권고할”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4(이행실태의 보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

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용대상 및 요건,”을 “적용대상, 요건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③ (생략)</p>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p> <p>1. (생략)</p> <p>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3. 4.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결격사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p> <p>3. 4. (현행과 같음)</p>
<p>제9조(해촉)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u></p> <p>3. ~ 5. (생략)</p>	<p>제9조(해촉)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금고 이상</u>-----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의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p>	<p>제10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개의(開議)하고</u>----- -----.</p>
<p>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p> <p>① (생략)</p> <p>② <u>옴부즈만은 현장조사,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사무직원에게</u></p>	<p>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u></p>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무직원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
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내용
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적
절한 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
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시
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감사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
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
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

--- 시정을 권고할 -----

-----.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
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삭제>

제13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

<신 설>

건의 표명)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읍부즈만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②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읍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4(이행실태의 보고) 제13

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읍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제14조(면책) ① (생략)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 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리하여 읍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적용대상, 요건 및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